

[별지 제41호의2서식] <개정 2016. 8. 4.>

## 식품( )영업등록신청서

|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  | 발급일자   | 처리기간 3일 |
| 신청인  | 성명     | 주민등록번호 |         |
|      | 주소     | 전화번호   |         |
| 신청사항 | 명칭(상호) | 영업의 종류 |         |
|      | 소재지    | 전화번호   |         |
|      | 영업장 면적 |        |         |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<br>제출서류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이수증(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2. 제조·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3.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4. 삭제 &lt;2016. 6. 30.&gt;</li> </ol> | 수수료<br><br>2만8천원<br>(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)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축물대장</li> <li>2. 토지이용계획확인서</li> <li>3. 건강진단결과서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/ol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# 유의사항

1.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.
 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하수도법」, 「농지법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, 「하천법」,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, 「관광진흥법」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, 「청소년보호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, 「지방세법」 등 그 밖의 관련 법령
2. 등록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.

#### 처리절차

